

2021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재외국민 ·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1년 3월 입학〉

CONTENTS

I. 모집단위 및 인원	1
II. 입학전형 일정표	2
III. 면접고사 대상	2
IV. 지원자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3
V. 전형방법	
1. 재외국민	5
2. 외국인	5
VI. 학생 선발 방법	5
VII. 지원자격	
1. 재외국민 특별전형	6
2. 외국인 특별전형	7
VIII. 지원자격 유의사항	
1. 재외국민 특별전형	8
2. 외국인 특별전형	9
IX. 입학원서 접수안내	9
X. 제출서류	
1. 재외국민 특별전형	11
2. 외국인 특별전형	12
XI. 수험생 유의사항	13
XII. 합격자 유의사항	13
XIII. 대학안내	14
[별지 서식]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력조회동의서	
[별지 서식] 재외국민 특별전형 종합기록표	
[별지 서식]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별지 서식]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외국인 특별전형 전공 학업계획서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전공	코드번호	입학정원	모집인원	선발 가능 인원
무도	체능	유도학과		110	60	25	6
		유도경기지도학과		115	60		6
		무도스포츠학과	레슬링	121	35		3
			씨름	122			
			복싱	123			
		동양무예학과	검도	131	56		5
			용무도	132			
			택견	133			
태권도학과	겨루기 및 품새	141	110	11			
체육과학	체능	경호학과		160	50		5
		스포츠레저학과		210	45		4
		체육학과		230	55		5
		골프학과		250	30		3
문화예술	예능	무용과		310	30		3
		미디어디자인학과		320	40		4
		회화학과		330	30		3
		연극학과		341	35		3
		국악과	현악	351	32		3
			관악	352			
			성악	353			
			타악	354			
		실용음악과	보컬	361	30		3
			피아노	362			
			기타	363			
			베이스	364			
			드럼	365			
			작곡	366			
		영화영상학과		370	30	3	
		자연과학	문화재학과		380	30	3
		인문사회	문화콘텐츠학과		390	30	3
AI융합	인문사회	경영학과		410	45	4	
		관광경영학과		430	30	3	
		경찰행정학과		460	45	4	
		중국학과		470	35	3	
	자연과학	AI학부	AI, 빅데이터	480	70	7	
보건복지과학	자연과학	산업환경보건학과		510	40	4	
		생명과학과		550	30	3	
		식품조리학부	식품영양, 외식조리	610	39	3	
		물리치료학과		620	30	3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630	40	4

모 집 인 원

1.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 선발(총 25명)

- 재외국민 : 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외 국 인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2. 정원에 관계없이 본교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 외 국 인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군사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지원 불가

II. 입학전형 일정표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입학원서접수	2020.07.20.(월) 10:00 ~ 24.(금) 15:00까지	uway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	인터넷 접수만 실시
서류제출기간	2020.07.31.(금) 15:00 까지	본교 입학관리실	본인, 대리인, 우편제출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면접고사 (해당자만 응시)	2020.07.28.(화)	본교 지정장소	면접 고사시간 및 고사장 발표는 2020년 7월 27일(월) 15:00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최초합격자 발표	2020.10.27.(화) 15:00 이후	본교 입학 홈페이지	합격자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문서등록 안내문 출력
합격자 최초 등록 (문서 등록)	2020.12.28.(월) 09:00 ~ 30.(수) 16:00까지	문서등록	· 본교 입학관리실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등록(서류를 통하여 등록 여 부를 확정하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함 · 등록기간에 문서등록을 완료하고 등록금 확정 후 최종 등록기간에 완납 ※ 문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총원 1차	합격자발표	2020.12.30.(수) 19:00 이후	
	등록	2020.12.31.(목) 09:00 ~ 16:00까지	
총원 2차	합격자발표	2020.12.31.(목) 19:00 이후	
	등록	2021.01.01.(금) 09:00 ~ 03.(일) 11:00까지	
총원 3차	합격자발표	2021.01.03.(일) 14:00 이후	
	등록	2021.01.04.(월) 09:00 ~ 16:00까지	
총원 4차	합격자발표	2021.01.04.(월) 21:00까지	
	등록	2021.01.05.(화) 09:00 ~ 16:00까지	
합격자 최종 등록기간	2021.02.08.(월) 09:00 ~ 10.(수) 16:00까지	본교 지정 금융기관	

III. 면접고사 대상

1. 아래 대상자는 면접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단,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 인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은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가 아니다.

면접고사 응시 대상

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 영주교포(영주권 소유)의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나. 외 국 인 특별전형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IV. 지원자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주 의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가.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 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2. 복수지원 금지 사항

-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나.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 라.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마.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한다.

3. 이중등록 금지

- 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한다.
- 나.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수시모집 합격자가 총원 합격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하며, 미등록 총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는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으로 등록포기는 되도록 총원발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4. 복수지원 위반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복수지원 위반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5. 모집단위(학과)별 전공구분이 있는 모집단위의 지원자는 하나의 전공종목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6. 외국인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예체능계열은 3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가. 본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나. 본교의 합격자로 분류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에서 활용됩니다.
- 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수험생 정보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학적부 생성, 학력 조회, 오리엔테이션 안내문자 발송, 장학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1년
보호자 정보		
학교 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 입학전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국제교류교육원 지정 협약업체	어학 강좌 프로그램 안내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1년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입학안내		
보험회사(학교지정)	면접고사 대상자 전원 상해보험 가입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고유식별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사 관리(학적부 생성)	주민등록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V. 전형방법

1. 재외국민 특별전형

가. 정원 외 모집인원 2%(총 25명) 이내

지원자격	일괄합산 전형		전형 총점	비고
	서류	면접		
영주교포의 자녀	적 · 부	100%	100%(100점)	서류상 지원 자격 미달 시 불합격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나. 정원 외 모집인원 2%(총 25명) 이외 무제한

지원자격	서류	전형 총점	비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100%	100%(100점)	서류상 지원 자격 미달 시 불합격
북한 이탈주민			

※ 서류전형은 재학기간, 체류기간, 재직기간 및 최종 학교 성적 등으로 실시함

2. 외국인 특별전형

가. 정원 외 모집인원 2%(총 25명) 이내

지원자격	일괄합산 전형		전형 총점	비고
	서류	면접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적 · 부	100%	100%(100점)	서류상 지원 자격 미달 시 불합격

나. 정원 외 모집인원 2%(총 25명) 이외 무제한

지원자격	서류	전형 총점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100% + 전공 학업계획서를 통해 전공적합도 판정(적 · 부로 판정)	100%(100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서류전형은 재학기간, 체류기간, 재직기간, 최종 학교 성적 및 자기소개서 등으로 실시함

VI. 학생 선발 방법

-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면접점수에 의한 성적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발표 일정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발표한다.
- 입학 전형성적 및 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동점자는 아래와 같은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면접성적(문항 영역 순 성적)
 - 외국학교 수학기간이 오래된 자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 본교에서 실시하는 해당 모집단위의 면접고사에 불참한 자(해당자에 한함)
 -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해당자에 한함)
 - 수업이행 및 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또는 학업이 곤란한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환자로 판명이 된 자

VII. 지원자격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의

- ①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 및 본인 모두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음(이중 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봄)
-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 국적 불필요
- ② 근무자 및 학생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일정 기간 동안 해외에 같이 체류해야 함
- ③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④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 ~ G3-1 중 한 개 학기만 G4-2 ~ 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가. 영주교포의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한 자

나.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한 자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한 자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3) 내국법인으로서는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4)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5)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1)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2)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마.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한 자

바.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한 자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한 결혼 이주민(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사. 북한이탈주민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아.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적법한 절차로 외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기타 재외국민(자영업, 현지법인, 해외파견 교직원, 해외 선교활동, 외국유학연수자)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한 자

2. 외국인 특별전형

주 의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은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예체능 계열은 3급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근무국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재학한 외국인(복수 국적자 제외)
-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 지원 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한 자(부모 국적이 외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학생 본인도 외국인으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VIII. 지원자격 유의사항

1. 재외국민 특별전형

가. 최저 해외 재학·체류·재직 기간

구분	최저 해외 재학·재학·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재직	체류	체류
영주교포의 자녀	3년	3/4	3년	2/3	2/3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3년	3/4	3년	2/3	2/3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3년	3/4	3년	2/3	2/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3년	3/4	3년	2/3	2/3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년	3/4	3년	2/3	2/3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3년	3/4	3년	2/3	2/3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며,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 사업 / 영업

나.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개인적인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음)

다. 「외국의 학교」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로서 해당국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하며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과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등은 제외한다.

라.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2. 외국인 특별전형

가. 최저 해외 재학·체류·재직 기간

구분	최저 해외 재학·재직·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재직	체류	체류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3년	3/4	3년	2/3	2/3

※ 복수 국적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 수업결손 없이 모든 학기를 연속으로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IX. 입학원서 접수안내

1. 원서접수 주요사항

가. 접수기간 : 2020.07.20.(월) 10:00 ~ 24.(금) 15:00까지

나. 접수방법 : 용인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접속 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배너 클릭

다. 전 형 료

구분	전형유형	면접 구분	전형료		인 터 넷 원서접수 수 수 료	납부 총액
			기본전형료 (지원자격 심사·서류 평가)	면접고사 전 형 료		
재외국민	영주교포의 자녀	면접 대상	70,000원	30,000원	5,000원	105,000원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70,000원	—	5,000원	75,000원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70,000원	—	5,000원	75,000원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면접 대상	70,000원	30,000원	5,000원	105,000원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70,000원	—	5,000원	75,000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70,000원	—	5,000원	75,000원

라.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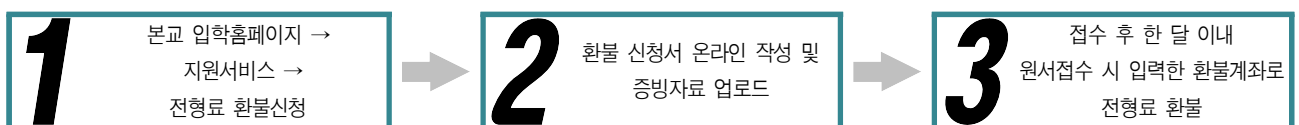
마.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단순변심, 지원자격 미달 등의 경우엔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전형료가 반환되지 않음

사. 면접고사에 불참한 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타 대학 고사일 중복으로 인한 불참 포함). 단,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전형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해당 일까지 전형료 환불 신청을 온라인 접수할 경우 전액 환불함(증빙자료 미 제출 시 신청 불가 및 환불 불가). 지정된 신청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접수 불가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20.07.27.(월) 15:00까지(기간 이후 신청 불가)

① 온라인 신청



※ 전형료 환불 계좌를 공통원서 작성 시 필히 사전 입력해야 하며,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계좌를 추가로 입력할 수 없음

② 방문 신청 : 본교 입학관리실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입학원서 접수방법



※ 입학원서접수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할 수 없으니 사전에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해야 하며, 시한 경과로 인하여 원서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3. 서류 제출방법

- 가. 제출기간 : 2020.07.31.(금) 15: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제출장소 : (우) 170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로 134 용인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실
-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라. 제출서류 도착확인 : 해당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 홈페이지나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서류의 도착유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4. 전형료 비례환불

-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의거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 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전형료 반환은 2021년 4월 30일 이전 본교가 공지한 반환 기간에만 반환한다.
-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본교 직접 방문 또는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 계좌로 이체 중 하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하여야 한다.
- 다. 반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직접방문 창구 운영 및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 라.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5. 입학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자는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반드시 읽어본 후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자료는 변경이 불가하다. 입력을 잘못하여 생긴 불이익(성적에 관계 없이 불합격)은 접수자 본인의 책임이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나. 인터넷 원서접수자의 입력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 재학 중이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 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 1부를 입학원서접수 시 제출한다.
- 라. 원서접수 후 제출서류가 있는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검토결과 지원자격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X. 제출서류

1. 재외국민

번호	구분	영주국포의자녀	해외근무공무원의자녀	해외근무상사직원의자녀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근무자의자녀	유치과학자및교수요원의자녀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기타재외국민의자녀	비고
	※ 재학증명서는 반드시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학교의 경우 재학기간이 증명서상에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의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재학증명서가 없는 경우 국내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제출 바람									
1	입학원서	●	●	●	●	●	●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학력조회동의서	●	●	●	●	●	●	●	●	인터넷 접수 시 출력 후 작성
3	종합기록표	●	●	●	●	●	●	●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후 출력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	●	●	●	●	●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6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명의 불가) 또는 호(제)적 등본	●	●	●	●	●	●	●	●	부모 이혼 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학생 본인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7	출입국사실증명(부모, 학생)	●	●	●	●	●	● (학생만)	●	●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	●	●	●	●	● (학생만)	●	●	
9	여권 사본(부모, 학생)	●	●	●	●	●	● (학생만)	●	●	
10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	●	●	●	●		●	●	영사민원24에서 발급 가능 (https://consul.mofa.go.kr)
1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외국 근무경력 기간 명시)	●	●	●	●	●				
12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								
13	해외지사설치인증허가서 사본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국내 은행권에서 발급
1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15	자영업							○		교회 재단 : 제출 가능 본인 자발적 선교 : 제출 불가
	현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현지법인							○		
	현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및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해외파견 교직원							○		
	파견사실증명서(재직 학교 자체 양식)							○		
	해외 선교활동							○		
	파송선교사확인서							○		
15	외국유학 연수자							○		
	파견사실증명서(재직 회사 자체 양식)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는 해당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단, 교육부에서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의 제 증빙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이 필요 없다.

※ 제출서류 외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서류 제출 시 항목별 연번이 낮은 번호의 서류가 위로 가도록 정리하여 제출할 것

2. 외국인(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연번	구분	비고
1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영사확인 문서 또는 아포스티유 문서만 인정)	
3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재학증명서(영사확인 문서 또는 아포스티유 문서만 인정)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영사확인 문서 또는 아포스티유 문서만 인정)	
5	여권 사본	학생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예체능 계열은 3급 이상) 취득 성적표 원본 1부	-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만 제출 - TOPIK 성적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역산 2년
7	자기소개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서식 출력 후 자필로 작성
8	전공 학업계획서	
9	출입국사실증명(부모, 학생)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추가 제출서류
10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12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 기간 명시)	
13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제적 등본)	
14	재정능력 입증서류 - 미화 \$20,000 이상의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본인 또는 부모의 은행잔고증명서(원서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한 것)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추가 제출서류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함

※ 외국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는 해당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단, 교육부에서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의 제 증빙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이 필요 없다.

※ 원본 제출이 안 되는 경우는 본교 방문 후 원본대조를 받거나 공증받은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외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평가(TOPIK) 성적표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항목별 연번이 낮은 번호의 서류가 위로 가도록 정리하여 제출할 것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 및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XI. 수험생 유의사항

1. 전형일에는 수험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청소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신분증 발행 전 임시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지참해야 함
2. 입학원서의 입력사항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와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3. 제출서류 상의 성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할 수 없다.
5.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 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6. 전형일에는 교사장 내에서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각종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7. 입학전형 성적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생선발방법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결정에 의한다.

XII. 합격자 유의사항

1. 최초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2.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합격자 안내문 등을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3. 등록금 환불 절차

가.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1)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에 접속하여 등록 포기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2) 로그인하여 등록 포기 신청

나. 등록금 환불 시 주의사항

: 등록금 환불 신청자는 환불 신청을 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하므로 기 제출한 등록금 환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등록금 환불금액

구 분	2021년 2월 28일까지	2021년 3월 1일부터
금액	등록금액의 100%	본교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일정 금액 공제 후 지불

4. 합격 취소

- 가. 합격자(총원 합격자 포함)가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
-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본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 다. 입학을 허가한 자를 대상으로 전적학교로의 학력조회 등을 실시하며, 확인 후 자격 미달자이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XIII. 대학안내

1. 장학금 안내

가. 교내장학금

: 이사장, 성적우수(Ⅰ,Ⅱ,Ⅲ), 체육우수, 글로벌인재, 인성, 보훈, 공로(학생간부), 교직원직계자녀, 야간학과, 특별, 생활복지, 가족복지, 언론(대학신문사/교육방송국), 근로(국가및일반), 각종경시대회, 외국인유학생, 장애우, 학군간부, 공무원(군)위탁생, 입영훈련우수후보생, 고시, 인턴십, 매칭, 포인트, 홍보도우미, 버디, 교직원기금, 코리아CC, 국제교류, 학과평가우수, 싱글맘 등

나. 교외장학금

● 학과지정장학금

: 삼구구자관장학금(경찰행정학과), 조진형장학금(경찰행정학과), (재)동화산업장학재단장학금(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재직교수장학금(경찰행정학과), 김상용장학금(경영학과), 경영학과장학금(경영학과), 진흥무역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小崎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유종영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씨테크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신성기업장학금(특수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실교육지원장학금(특수체육교육과), 리더스클럽장학금(경호학과), 경호학과동문회장학금(경호학과), 발광엔터테인먼트장학금(동양무예학과-택견), 축구부지정장학금(파인트리천강용님), 격기지도학과(씨름)장학금, 태권도학과지정장학금, 한국가스공사(태권도학과),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학금(문화재학과), 태건장학금(문화관광학과), 문화콘텐츠학과재직교수장학금(문화콘텐츠학과), (주)단잡(문화콘텐츠학과), 로우핸드(문화콘텐츠학과), 검도동문회장학금(검도), CEO29기장학금(경영학과, 문화관광학과), 중국학과동문회장학금(중국학과), 용인대81학번동기회장학금(유도,태권도,복싱,씨름), 소액정기기부장학금 등

●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는 장학금

: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재)아산사회복지재단, (재)한원장학회, KRA농어촌희망재단, (재)주심장학재단, (재)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재)하나금융나눔재단,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재)배정장학회, (재)서울장학재단, (재)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재)S&T장학재단, (재)삼원장학재단, (재)성남시장학회 등

● 단과대학으로 추천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정하는 장학금

: 용인대학교동문회장학재단, 경기도체육회 등

● 장학재단에서 지급대상자를 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용인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용인대학교 여교수장학회, (재)삼송장학회, (재)형애장학회, (재)해성문화재단, (재)정산장학재단, (재)본술김종환장학재단, (재)한석경장학회, (재)영풍문화재단, (재)금옥학술문화재단, (재)이스테파노(재원)장학회, (재)성혜장학회, (재)덕영재단, (재)농협재단, 경기도태권도동문회 등

● 기타 : 각 지방자치단체 애향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각종 지정기부장학금 등

다.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 유형, Ⅱ 유형, 다자녀), 국가근로장학금

라. 문의

: 각종 교내외장학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본교 홈페이지(학사지원-장학대출제출-장학대출)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0학년도(전년도) 신입생 등록금 현황

가. 본교 2020학년도 계열별 등록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계열	입학금	수업료(학기)	합계	비고
인문사회	405,000	3,413,000	3,818,000	
자연	405,000	3,836,000	4,241,000	
체능	405,000	3,821,000	4,226,000	특수체육교육과 포함
예능	405,000	4,399,000	4,804,000	

3. ROTC(학생군사교육단) 안내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제도는 우수한 대학생들을 장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여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2년간(3, 4학년) 소정의 군사교육을 병행하여 졸업과 동시에 소위(국가공무원 7급)로 임관하여 소대장 및 참모 직책을 경험하는 등 2년 4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R.O.T.C 출신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무겸전의 R.O.T.C 제도는 대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선택된 제도입니다. 우리 용인대학교는 2005년 국방부 및 교육부로부터 학군단 설립인가를 승인 받아 2006년 3월 8일부 창설, 용인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1기생(학군 46기)이 처음으로 입단하여 현재까지 485명이 장교로 임관하였습니다.

가. 선발방법

- 모집시기 : 연 1회(3월 ~ 8월)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 4년제 대학 1, 2학년 남·여학생
- 선발요소 및 배점

구분	계	1차 선발			2차 선발	3차(최종) 평가		
		필기고사	대학성적	수능 또는 내신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신원조회
2학년 정시선발	1,000점	200점	100점	200점	400점	100점	합·불	최종 심의 시 반영
1학년 정시선발	900점	200점	-	200점	400점	100점	합·불	

※ 최종선발에서 동점자는 면접, 체력, 필기, 대학성적, 수능 또는 내신성적 순 선발

나. 다양한 혜택

- 사관후보생 혜택
 -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증 발급(육군 휴양시설 이용 가능, 육군 문화공연 및 협약 업체 할인 혜택)
 - 국내 및 해외 전사적지 탐방
 - 조직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대학별 우수 후보생 장학금 지원 및 ROTC 장학재단 등 장학금 지원
 - 단기 복무장교 장려금 및 2년간 매월 교보재비 지원
- 임관 후 혜택
 - 장교과정 중 최단기간 복무(28개월)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 가능
 - 장기 지원시 국내·외 민간대학원 국비취학 가능
 - 숙소, 병원, 휴양시설, 군 운영매장 이용
 - 임관 시 연봉 약 2,4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5,000만원 목돈마련 가능
 - * 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에 인정, 1년후 중위 진급
 - 군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 →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 전역 후 혜택
 - 전역 전 각종 취업설명회 참석 / 취업 여건 보장
 - 각계각층의 ROTC 선·후배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 ROTC 동문 단체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
 - * 현재 전국 시·도 단위, 직장별 동문회 결성(약 20만명 규모)

4. 교내 주요업무별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입학전형 및 제반업무 안내	입학관리실	031-8020-3100
학점, 전과, 휴학, 교직이수 안내	학사관리과(학적계)	031-8020-2514~5, 2993~4
수강신청 안내	학사관리과(수업계)	031-8020-2510~1, 2516, 3022
등록금 납부(등록) 관련 안내	회계과	031-8020-2529, 2530
ROTC 안내	학생군사교육단	031-8020-3477~8
각종 장학제도 및 학자금 대출 안내	장학과	031-8020-2957, 2869
교통 안내	학생지원과	031-8020-2520~1, 2892
각 학과 안내	무도대학 교학과	031-8020-2855
	체육과학대학 교학과	031-8020-2660
	문화예술대학 교학과	031-8020-2688
	시융합대학 교학과	031-8020-2745
	보건복지과학대학 교학과	031-8020-3074



Office of Admission, Yong In University
134 Yongindaehak-ro,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92, Korea

Tel 82-31-8020-3100
Fax 82-31-8020-2737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Yong In University in Yongin-si, Korea for the 2021 academic year and agree that Yong In University could rightfully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you to provide your full assistance to Yong In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ment.

Name : _____

Date of birth : _____
yyyy/mm/dd

Date of graduation : _____
yyyy/mm/dd

High School Name : _____

High School Address : _____

Tel : _____

Fax : _____

E-mail : _____

Website address : _____



Signature



Date

yyyy/mm/dd

종합기록표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단위	
지원 구분	☐ 영주교포의 자녀 ☐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해외근무 상사지원의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지원자 기재사항

[illegible]

○ 부모 기재사항

※ 학생의 재학 인정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 기재

※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학생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만 지원 가능함

부(父)	해외 체류 기간				모(母)	해외 체류 기간			
	기간	체류 연수	체류국	근무처		기간	체류 연수	체류국	근무처
참고사항	☐ 부모 이혼 ☐ 아버지 사망 ☐ 어머니 사망								

위 기재사항은 서류심사 시 기본자료로 활용됨을 숙지하고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지원자와의 관계 :

※ 특이사항(수험생 기재란)	※ 특이사항(대학담당자 기재란)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부, 모, 학생 각각 1부씩 작성

※ 부, 모, 학생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1)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포함 Yes []미포함 No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포함 Yes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포함 Yes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 해외 재학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입력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용인대학교 입학관리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담당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031-8020-2916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입학 업무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To the Chief of Suwon Immigration Office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 인터넷 접수 시 서식 출력 후 자필로 작성

외국인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2021학년도 3월 신입학]

이름 (Legal Name)

Enter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passports or other official documents. Last/Family First Middle(complete) Jr., etc.

수험번호 (Examinee's number)

지원학과 (Department)

전공 (Major)

전화 (Phone)



Signature



Date

yyyy/mm/dd

[외국인 특별전형 전공 학업계획서]



※ 인터넷 접수 시 서식 출력 후 자필로 작성

외국인 특별전형 전공 학업계획서 [2021학년도 3월 신입학]

이름(Legal Name)

Enter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passports or other official documents. Last / Family First Middle(complete) Jr., etc.

수험번호(Examinee's number)

지원학과(Department)

전공(Major)

전화(Phone)



Signature



Date

yyyy/mm/dd